

2025학년도 2학기(2025-전기) 석사/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

2025학년도 2학기(2025-전기) 석사/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을 안내하오니 해당 대학원생은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2025학년도 2학기(2025-전기) 석사/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일정(예정)

내 용	일 자	비 고
(석/박사)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제출	2025. 10. 27. ~ 10. 30.	
(석/박사) 학위청구논문 본논문(예비심사용) 제출	11. 03. ~ 11. 07.	
(석/박사)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	11. 12. ~ 11. 17.	
(석/박사) 학위청구논문 본논문(본심사용) 제출	11. 24. ~ 11. 28.	
(석사) 학위청구논문 본심사	12. 01. ~ 12. 05.	
(박사) 학위청구논문 본심사(구술시험 포함)		
(박사) 학위청구논문 본논문(종심용) 제출	12. 09. ~ 12. 12.	
(박사) 학위청구논문 본심사(종심)	12. 17. ~ 12. 23.	
(석사/박사) 학위 인준 논문제출	2026. 01. 09.	

※ 위의 일정은 진행상 변동될 수 있음.

※ 수료생 중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(예정)자는 연구등록신청서 제출 후 (연구)등록 기간에 반드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.

2. (석/박사)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관련 주요내용

구분	석사학위과정	박사학위과정										
학위청구 논문 제출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, 당해 학기에 해당 수료 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-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평균 3.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-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(해당자에 한함) -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된 상태에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-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- 논문 초록발표 결과 “가” 판정을 받은 자 - 수료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 - 연구윤리준수교육을 이수 받은 자 -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(제출연한이 경과한 자는 재부여 승인 후 신청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, 당해 학기에 해당 수료 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-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평균 3.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-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(해당자에 한함) -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된 상태에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-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-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(대학원학칙시행세칙 별표1 참조)에 100%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작 100%(대학원학칙시행 세칙 별표1 참조)를 출판한 실적이 있는 자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연구실적 인정비율 >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5px;">1) 단독연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: 2px 5px;">100%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5px;">2) 공동연구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5px;"> 가) 논문지도교수와 공동연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: 2px 5px;">100%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5px;"> 나) 기타 2인 공동연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: 2px 5px;">70%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 5px;"> 다) 3인 이상 공동연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: 2px 5px;">50%</td> </tr> </table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논문 초록발표 결과 “가” 판정을 받은 자 - 수료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 - 연구윤리준수교육을 이수 받은 자 -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(제출연한이 경과한 자는 재부여 승인 후 신청가능) 	1) 단독연구	100%	2) 공동연구		가) 논문지도교수와 공동연구	100%	나) 기타 2인 공동연구	70%	다) 3인 이상 공동연구	50%
1) 단독연구	100%											
2) 공동연구												
가) 논문지도교수와 공동연구	100%											
나) 기타 2인 공동연구	70%											
다) 3인 이상 공동연구	50%											
학위청구 논문 제출연한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군 의무복무 기간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. -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 추천과 학과교수회의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할 수 있다.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료일로부터 10년 이내</p>										
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기간	<p>2025. 10. 27.(월) ~ 10. 30.(목) 18:00</p> <p>※수료생 중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(예정)자는 연구등록신청서 제출 후 (연구)등록 기간에 반드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.</p>											

<p>금강대학교 대학원학칙 제46조의 2(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내 등록생) ① 대학원 수료 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등록생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3.1.></p> <p>② 연구등록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구등록비(학기당 수업료의 15%)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15></p> <p>③ 연구등록생은 기숙사, 도서관 등 학교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.<신설 2020.3.1.></p> <p>금강대학교 대학원학칙 제46조의 3(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초과 등록생)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초과한 자가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미응시자를 포함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는 해당학기부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등록하여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응시 포함 논문지도와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하며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아야 한다.<신설 2020.3.1.></p> <p>② 1항의 등록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구등록비(학기당 수업료의 33%)를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6.15.></p> <p>③ 연구등록생은 기숙사, 도서관 등 학교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.<신설 2020.3.1.><개정 2020.6.15></p>				
제출서류	심사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위 청구논문 제출승인 신청서 1부 -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부 - 심사로 납부 영수증(300,000원) -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서[석사: 3인](논문지도교수 경우 제출) - 연구윤리준수교육 확인서(수료증) 1부 	심사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위 청구논문 제출승인 신청서 1부 -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부 - 전문 학술지 논문 게재 확인서 및 게재 논문 1부. - 박사학위청구논문 연구실적 인정서 1부. - 심사로 납부 영수증(500,000원) -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서[박사:5인(3인은 내부,2인은 외부교원)]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외부위원)(논문지도교수 경우 제출) - 연구윤리준수교육 확인서(수료증) 1부
	본논문 (예비심사용) 제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위청구논문 본논문 3부 	본논문 (예비심사용) 제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위청구논문 본논문 5부
	본논문 (본심사용) 제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- 논문표절검사(문헌유사도검사)결과 확인서 1부. [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유사도 검사 후 결과 클릭(종합결과 다운로드 하신 후 논문지도교수 확인)] - 학위청구논문 본논문 3부 	본논문 (본심사용) 제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- 논문표절검사(문헌유사도검사)결과 확인서(본심) 각1부. [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유사도 검사 후 결과 클릭(종합결과 다운로드 하신 후 논문지도교수 확인)] - 학위청구논문 본논문 5부
	-	-	본논문 (종심용) 제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논문표절검사(문헌유사도검사)결과 확인서(종심) 각1부. [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유사도 검사 후 결과 클릭(종합결과 다운로드 하신 후 논문지도교수 확인)] - 학위청구논문 본논문 5부
	학위인준 논문 제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논문 6부(하드표지 종이제본 대학원 2부, 도서관 4부)와 전자식자본(USB, 한글파일) 1부 -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,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비공개(공개) 신청서, dCollection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,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자료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각1부. 	학위인준 논문 제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논문 6부(하드표지 종이제본 대학원 2부, 도서관 4부)와 전자식자본(USB, 한글파일) 1부 -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,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비공개(공개) 신청서/dCollection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,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자료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각1부.

	300,000원	500,000원
심사료 납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납부기간: 2025. 10. 27.(월) ~ 10. 30.(목) 18:00 - 납부계좌: 425-01-132657(농협) 금강대학교 ※ 본인명의로 입금 할 것 - 납부확인서: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제출 시,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 	

3. 논문심사 절차

- 가.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된 상태에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
- 나. 외국어시험 응시(2학기 이상 등록한 자)합격
- 다. 전공종합시험 응시(석사-3학기 이상 등록, 18학점 이상 취득하고,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)합격
(박사-4학기 이상 등록, 24학점 이상 취득하고,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)합격
- 라. 논문 초록발표 결과 “가” 판정
(※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는 논문 초록심사 이전학기까지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적시되도록 보완하여 제출하고, 발표 절차를 거쳐야 함)
- 마. 학위 청구논문 심사신청 관련 서류 제출 및 심사료 납부
- 바. 본 논문(예비심사 및 본심사용) 제출 및 심사
- 사.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및 논문표절검사(문헌유사도검사) 결과 확인서 제출
- 아.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
- 자. 심사를 통과한 논문 6부(하드표지 종이제본 대학원 2부, 도서관 4부)와 전자식자본(USB, 한글파일) 1부 및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,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비공개(공개) 신청서, dCollection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,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자료 비공개 및 공개 신청서 각각 제출

4.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시 유의사항

- 가.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에 의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접수하되, 자격 미달자는 접수대상 아님.
 - 1) 등록학기 및 취득 학점 수
 - 수업연한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하며, 석사과정 2년, 박사과정 2년 6개월 이상으로 한다.[대학원학칙 제5조(수업연한)참조
(2020.10.22.일 이후 적용(2019.4.8.이후 포함)/ 2019.4.8일 이전: 석사과정 2년, 박사과정 2년)
 - 석사과정은 24학점이상,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였거나, 당해 학기에 해당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
 -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평균 3.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
 - 2)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(해당자에 한함)
 - 3)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된 상태에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
 - 4)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 합격한 자
 - 5) 논문 초록발표 결과 “가” 판정을 받은 자
(※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는 논문 초록심사 이전학기까지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적시되도록 보완하여 제출하고, 발표 절차를 거쳐야 함)
 - 6) 수료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
 - 7) 연구윤리준수교육을 이수 받은 자

8) 박사과정의 경우,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%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작 100%를 출판한 실적이 있는 자

9) 논문제출연한 경과여부

- 석사학위과정: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

- 박사학위과정: 수료일로부터 10년 이내

※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 추천과 학과교수회의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재 부여할 수 있다.

10) 심사료 납부여부

나. 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쓰고 횡서로 한다. 국문으로 작성할 경우 영문초록을,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다. 논문심사위원(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1조)

금강대학교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41조(심사위원) ① 심사위원은 석사논문의 경우 3인으로, 박사논문의 경우 5인(3인은 내부, 2인은 외부교원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외부교원을 3인으로 할 수 있음)으로 구성하되, 논문 제출자의 전공분야나 인접분야의 교수 혹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논문지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2. 12. 27., 2025. 4. 23.>

② 논문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.

③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고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
④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 교체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논문지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. <개정 2025. 4. 23.>

⑤ 논문심사위원의 자격 등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한다.

라. 대학원에 제출하는 논문은 규정된 심사위원 중 “우” 이상으로 평가한 위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.

문의 : 대학원 (041-731-3218)